

[별표 4] <신설 2018. 5. 17.>

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(제10조 관련)

취소일	환불비율
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	전액환불
이용예정일 9~7일전	사전 납부된 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
이용예정일 6~5일전	사전 납부된 금액의 30% 공제 후 환불
이용예정일 4~2일전	사전 납부된 금액의 50% 공제 후 환불
이용예정일 1일전	사전 납부된 금액의 80% 공제 후 환불
이용 당일	환불불가

※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가비는 환불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(당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고 당일 취소할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)